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812
------	------

2025. 6.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김경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운영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도 서울시는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하여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근 그라운드즈의 잔디 논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시장이 시립체육시설의 각종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립체육시설의 경기장 잔디 관리부실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시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종합계획 필요성

- 종합계획은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25년 5월 기준, 서울시에는 15개의 시립체육시설이 있으며, 시립체육시설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경기 외에도 문화행사 및 임대시설 운영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시립체육시설 주요 현황 >

연번	관리부서	시설물명	연면적(m ²)	준공 년도	주요기능	운영자	
1	체육정책과 (3개 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166,678	2001	축구	대행	서울시설공단
2		고척스카이돔	83,623	2015	야구		
3		장충체육관	11,399	1963	농구/배구		
4	체육진흥과 (1개 시설)	산악문화체험센터	2,197	2020	클라이밍	위탁	박영석산악문화 진흥회 .마포구체육회
5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1개 시설)	잠실 주경기장	111,792	1984	종합	직영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6		잠실 실내체육관	26,096	1979	농구/공연		
7		잠실 제1수영장	22,479	1980	수영		
8		목동 주경기장	22,124	1989	종합		
9		목동 야구장	19,114	1989	야구		
10		구의 야구장	17,330	2008	야구		
11		신월 야구공원	18,947	2008	야구		
12		잠실 야구장	45,312	1982	야구	위탁	(주)LG스포츠 (주)두산베어스
13		목동 빙상장	14,700	1989	빙상		(주)와이키키신사 점
14		효창운동장	28,524	1960	축구		서울시축구협회
15			잠실 제2수영장	6,021	1979	수영	무상 사용

- 현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종합계획 혹은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보면, 서울시설공단에게 위탁운영 중인 3개 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만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시립체육시설 중 중장기계획 수립 시설 현황 >

시설명	구분	수립기관	계획명	수립일자
서울월드컵경기장	중장기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시설물 중장기 정비계획	2018.6.29.
	중장기	서울시설공단	「LCC 분석기반」 서울월드컵경기장 중장기 시설물 관리 계획	2023.2.15.
장충체육관	중장기	서울시설공단	장충체육관 시설물 중장기 정비계획	2018.11.14.
고척돔구장	중장기 (실행 계획 포함)	서울시설공단	'19~'25년 각 연도별 시설물 연간(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연초(매년)

- 이는 기존의 시립체육시설을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위탁하고 있기에 시설별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음.
- 시립체육시설 역시 서울시의 체육활동 확대 목적과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완공 이후 건축물이 노후되고 시민의 요구사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안 제3조의2)

-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¹⁾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²⁾ 또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은 법령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음.
- 지난 2023년 전주시를 연고지로 하는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의 경우, 노후화된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던 끝에 부산시로 이전을 확정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운영이 지역 연고구단 및 시민들의 희망사항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서울 잠실야구장의 경우 한국 야구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40년 만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람석, 전광판, 라커룸 등의 시설 개선을 2022년 완료한 바 있으며, 고척스카이돔은 2024년 MLB 서울 시리즈 유치에 위해 약 6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라커룸, 식당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관리·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계속되는 축구계의 요청에도 언론에서 지탄받는 잔디 문제 외 관중석·기자석 현대화, 라커룸 노후화, 연습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아울러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떨어진 구조물이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구역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보도를 발표하여 사회적인 비판을 받음.
- 서울시 역시 주요한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주)LG스포츠·(주)두산베어스 등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창원NC파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관광체육국이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의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1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김성준,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송도호, 아이수루,
, 오금란, 유정희,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최재란, 한 신, 허 훈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운영하여 시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도 서울시는 소관 시립체육 시설에 대하여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근 그라운드외 잔디 논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시장이 시립체육시설의 각종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시립체육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이하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
4.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p> <p><u>②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u> <u>2. 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u> <u>3.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u> <u>4.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3조의2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를 추가·신설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당 종합계획 수립방식¹⁾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나 서울시 통상적 사례²⁾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종합계획 수립방식 예시] ① 학술용역(실태조사 등)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 ② 출연연구기관 연구수행 결과물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2) [고려사항] 통상 출연연구기관(서울연구원 등) 연구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향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용역 추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상할만한 합리적 정보가 적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